

동두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6-89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. 5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2010. 11. 15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「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동주민센터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규정 마련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총 무 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성명	총무과장 장 위 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시정담당 손 덕 환
	담 당 자 성명·전화	박 정 호 860-2122

[별표 1]

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규
사회복지과	매장·화장·개장 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주민생활지원실	1.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	「의료급여법」 제8조
	2.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	「의료급여법」 제8조
농업녹지과	1. 농지원부의 작성 및 비치 등	「농지법」 제49조
	2.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	「농지법」 제50조
민원봉사과	출입국사실증명 발급	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